

충청북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취득하여 등기하는”을 “취득 또는 등기하여 직접 사용하는”
으로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 등록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를”으로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 (면제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나관리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등이 음성나환자의 재활정착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여하는 경우 이를 <u>취득하여</u> <u>등기하는</u> 음성나환자 또는 음성나환자 정착촌 대표자에게 <u>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u></p>	<p>제2조 (면제대상) <u>취득 또는</u> <u>등기하여 직접 사용하는</u> <u>취득세, 등록세, 및 소</u> <u>방공동시설세를</u></p>